

美 IEEPA 관세 소송 동향과 대응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전격전'을 전개하며, 1기 적극 활용했던 232조·301조 외에 IEEPA를 근거로 관세 도입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캐·멕·중 관세(2/4), 對세계 보편(4/5) 및 상호관세(4/9) 부과

■ IEEPA 관세 부과 직후부터 영향권인 수입업체들은 관세 위법 소송 잇달아 제기 시작

- 그 중 '자유정의센터'(美 기업 5개사 대리)와 오리건주 등 12개 주정부*가 美 국제무역법원(CIT)에 제기한 2개의 소송 병합(VOS Selections 사건)해 현재 대법원 심리 중
- *오리건주, 애리조나주, 콜로라도주, 코네티컷주, 델라웨어주, 일리노이주, 메인주, 미네소타주, 네바다주, 뉴멕시코주, 뉴욕주, 버몬트주



美 연방대법원 재판 결과 예측 어려워

- 미 국제무역법원(CIT)(5/28)에 이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도 IEEPA 관세조치 위법 판결(8/29)

진행 중

1심 (국제무역법원)

- ▲입법부의 관세 입법권 침해, ▲ 권한 초과, ▲ 무역적자 대응수단 불가, ▲ 비상사태 해소 위한 조치로 국한
- IEEPA 관세 모두 무효화 판결, 집행정지

2심 (연방항소순회법원)

- IEEPA 월권, '중대 질문 원칙' 위배, 요시다 판례(`75) 차별화 등 판시
- 12명 판사 중 11명 참여, 7:4로 판정
- 1심 법원에 보편적 금지 명령 재검토 지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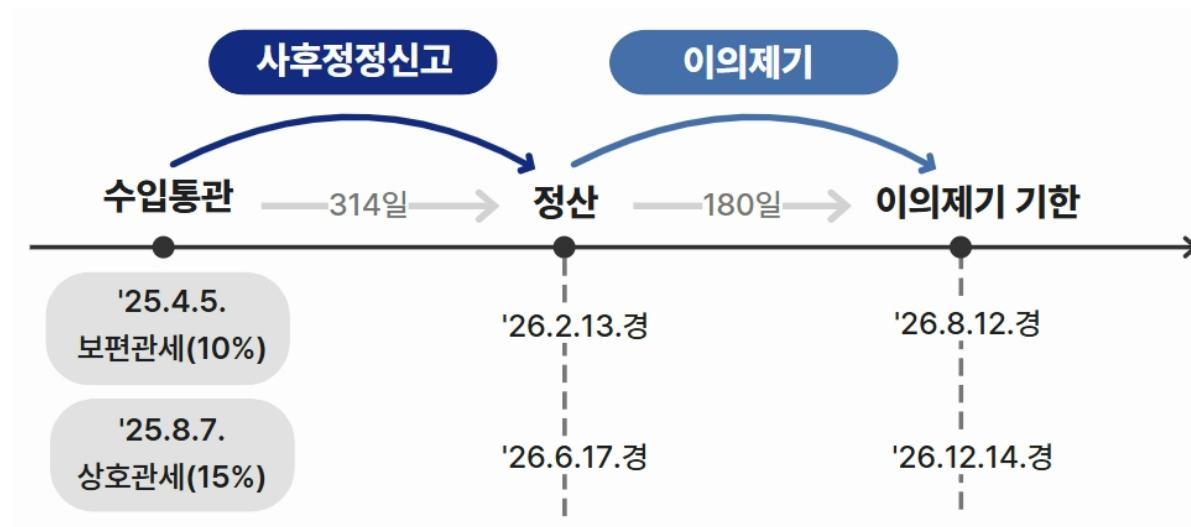
3심 (연방대법원)

- 첫 심리 및 공개변론 진행(11/5), 다수 대법관 회의적 태도
- 보수성향 대법원(6:3) 구성, 중간선거 앞둔 점, 지나치게 정치화된 점 등 변수

- 트럼프, "정부 패소시 환급해야 할 관세와 투자금은 2조 달러를 넘는다."
- 최종 패소하더라도 통상법 122조, 301조, 관세법 338조 등 동원한 'Plan B' 가동 예상
- 상반기 중 통상분야 주요 일정 : 연두교서(2월) – 통상정책의제(TPA, 3월)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4월) – 스페셜 301조 보고서(4월)

최종 판결은 내년 초 예상, 관세 환급이 허용되더라도 절차 주의할 필요

- 법원이 사건을 신속심리(expedited review)로 진행하며 2026년 초, 늦어도 대법원 휴정 이전인 상반기 중 최종 평결 전망
- 대법 판결 임박 및 정산 시점 가까워지며 2/4 조치 개시된 캐-맥-중 관세 관련 정산(liquidation) 금지명령(injunction) 신청이 발생
- CBP 정산 약 314일 소요. 對한국 관세부과 4/5부터 개시, 2/13경부터 정산 개시 전망. 정산-소송 스케줄 근접해 사후 준비는 다소 촉박 가능성
- 행정부 패소/환급 가정** 하에 정산일정, 거래조건, 환급당사자 적격 등 확인하고, 관세 납부내역 및 증빙서류 관리 등 사전 준비할 필요



통상뉴스레터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 2025.09.02

NO.1371

NEWSLETTER

트레이드 포커스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조치는 의회의 입법권과 권리분립 원칙을 침해한다는 비판 속에서 입법·사법적 견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명성과 유산 확보를 위해 고강도 통상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의 자국중심적 통상 기조는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뉴노멀'로 자리잡고 있다.

통상뉴스

미상무장관, 무역합의 충분한 이행 전까지
대일 관세 '스테킹(Stacking)' 방식 유지

미국 법무부, 관세 회피 단속 위해
국토안보부와 합동 TF 출범

해외보고서

Trump's economic agenda is set to collide with the Supreme Court (Atlantic Council)

The art of the alliance: 3 takeaways from the Trump-Lee summit (Brookings)

지난 통상리포트

미국, 관세 파도에서 살아남기: 실무 유의사항과 대응 전략

미국,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대상 파생제품 확대



감사합니다





법무법인(유) 세종

관세 환급 관련 법적 쟁점 및 대응전략

2025. 12. 19. | 윤영원 변호사

목 차

I. 관세 환급의 배경 – IEEPA 관세 소송

II. 관세 환급을 위한 핵심 절차

III.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및 준비사항

I.

관세 환급의 배경 – IEEPA 관세 소송

I. 관세 환급의 배경 – IEEPA 관세 소송

경향신문

미 대법원 '트럼프 관세' 심리 시작...위법 판단 땐 전 세계 '환급' 대혼란

배시은 기자 2025-11-04 22:32



‘국가 비상사태’ 주장 수용 불투명 대통령 권한 위임 범위도 쟁점 무효 때도 다른 법으로 유지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국가별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심리가 곧 시작된다. 상호관세가 이미 시행 중이고, 한국 등 일부 국가가 관세율을 포함하는 내용의 무역합의를 미국과 타결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법원이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대법원이 5일 구두변론기일을 열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무역 적자라는 비상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관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100여 개국에 10~50%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는 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비상사태 개념에 대한 법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타라리 그로브 텍사스 대법학과 교수는 “대법관들이 장기적인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의미다.

반면 존 사우어미 법무부 송무 담당 차관은 “비상 대응이 필요한 외교 상황에 관해 법원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회가 관세와 같은 입법부의 고유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했는지도 쟁점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라는 단어는 IEEPA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다”며 “미 헌법에 따라 관세할 수 있는 주체는 의회뿐”이라고 지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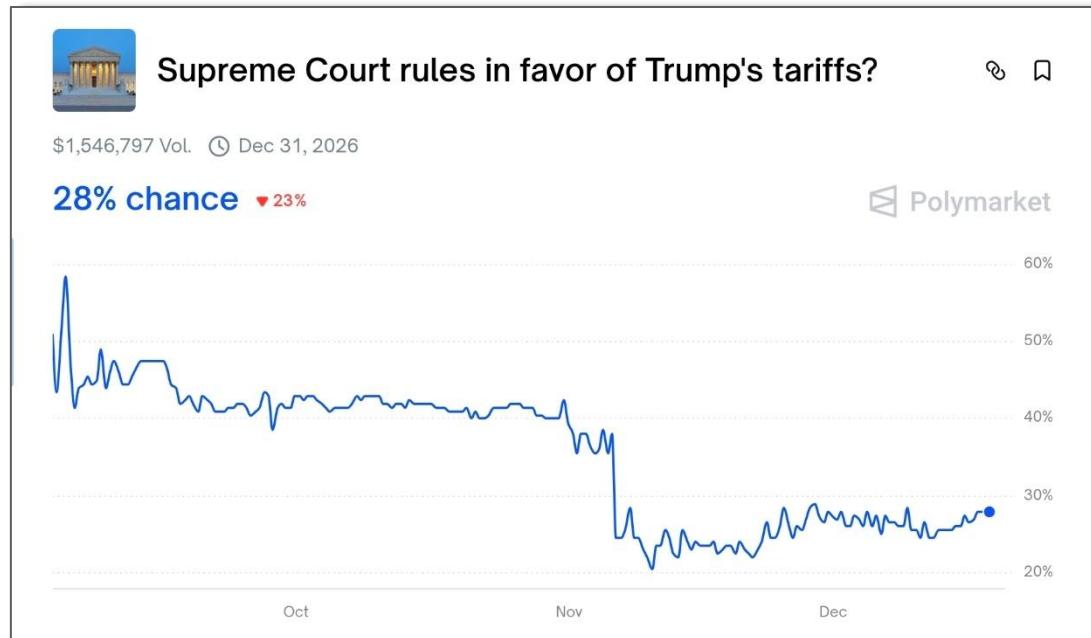
I. 관세 환급의 배경 – IEEPA 관세 소송



I. 관세 환급의 배경 – IEEPA 관세 소송



연방대법원 판결 결과 예측



출처: <https://polymarket.com/event/will-the-supreme-court-rule-in-favor-of-trumps-tariffs?id=1766042816918>
(2025. 12. 18. 16:42 (KST) 기준)

핵심 기회

- 최대 \$210억 환급 가능성
- 연방대법원 최종 판결 임박
 - 25말 또는 26초

핵심 리스크

- 자동환급 X
- 엄격한 법적·행정적 기한 준수 필수
 - 기한 초과 시 권리 영구 상실

I. 관세 환급의 배경 – IEEPA 관세 소송



'트럼프 190조원 상호관세 토해낸다' 베팅하는 미국 기업들

차대운 기자 2025-12-16 11:41

코스트코서 레이밴까지...눈치보던 기업들 '환급 앞줄서기' 경쟁

관세환급 현실화 땐 큰 혼란 가능성...걷은 관세, 이미 재무부 넘어가기 시작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가 미국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날 경우 미국 정부는 이미 거둬들인 약 190조원 규모에 달하는 거대한 관세를 납부한 수입 업자들에 돌려줘야 할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해 코스트코에서 레이밴에 이르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에 베팅해 관세를 낸들보다 먼저 돌려받기 위한 차원에서 잇따라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근 수주 동안 코스트코, 레вл론, 범블비 푸즈, 레이밴 제조사 등이 잇따라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부과 징수한 모든 관세를 환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대법원이 이르면 연내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가리는 최종 판결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다른 기업들보다 먼저 이미 납부한 상호관세를 돌려받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이다.

악시오스는 "그간 큰 기업들은 정부의 반감을 사는 것을 피하려고 했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주도해온 법적 분쟁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고 이들 대기업의 움직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심각한 무역 적자가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지난 4월부터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부여한 IEEPA 조항을 법적 근거로 삼아 세계 주요국에 이른 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상호관세는 무역 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 자동차 등 상품에 별도로 부과 중인 품목 관세와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의 양대 축 가운데 하나다.

II.

관세 환급을 위한 핵심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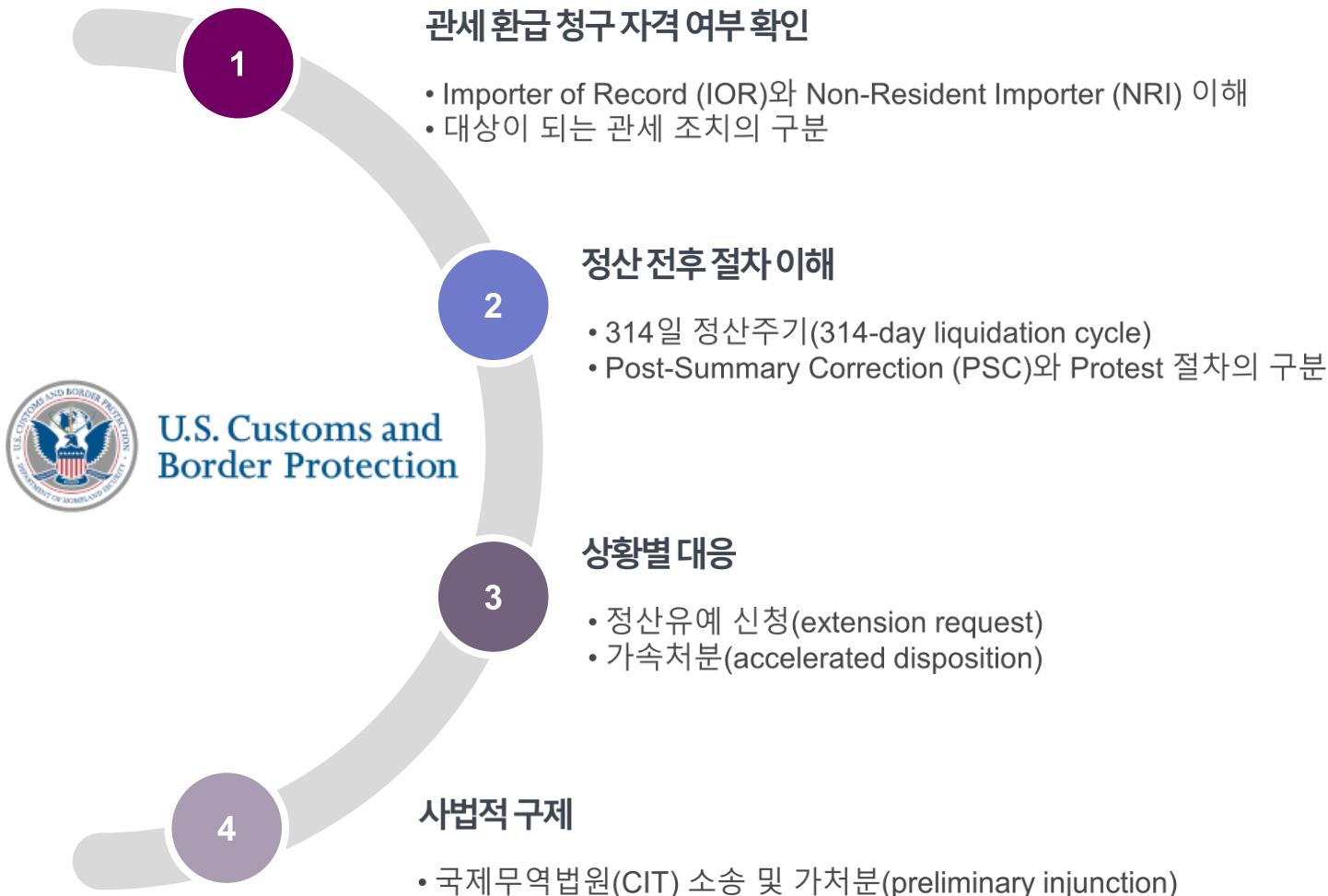
KITA
한국무역협회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II. 관세 환급을 위한 핵심 절차



환급 청구를 위한 핵심 로드맵



II. 관세 환급을 위한 핵심 절차



환급 청구 자격



미국 관세 실무상 핵심 개념

**Importer of Record
(IOR)**

**Non-Resident Importer
(NRI)**

**Delivered Duty Paid
(DDP)**



관세 환급 청구 자격 여부에 대한 판단

- Importer of Record에 해당하는 경우 → 관세 환급청구 가능
 - 미국 계열회사를 통해 수입
 - DDP 조건으로 수출하고, Non-Resident Importer에 해당하는 경우
- Importer of Record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직접 관세 환급청구 어려움

II. 관세 환급을 위한 핵심 절차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없는 경우

→ 미국 수입업자와 계약상 권리 분석

- 미국 수입업자와 계약 관계에 따라 관세를 누가 부담하는지
- '관세의 납부'와 '물품 대금의 할인'의 구분
- 관세 환급청구, 정산유예 신청 등 조치를 요구하고 환급을 받을 관세의 배분에 대해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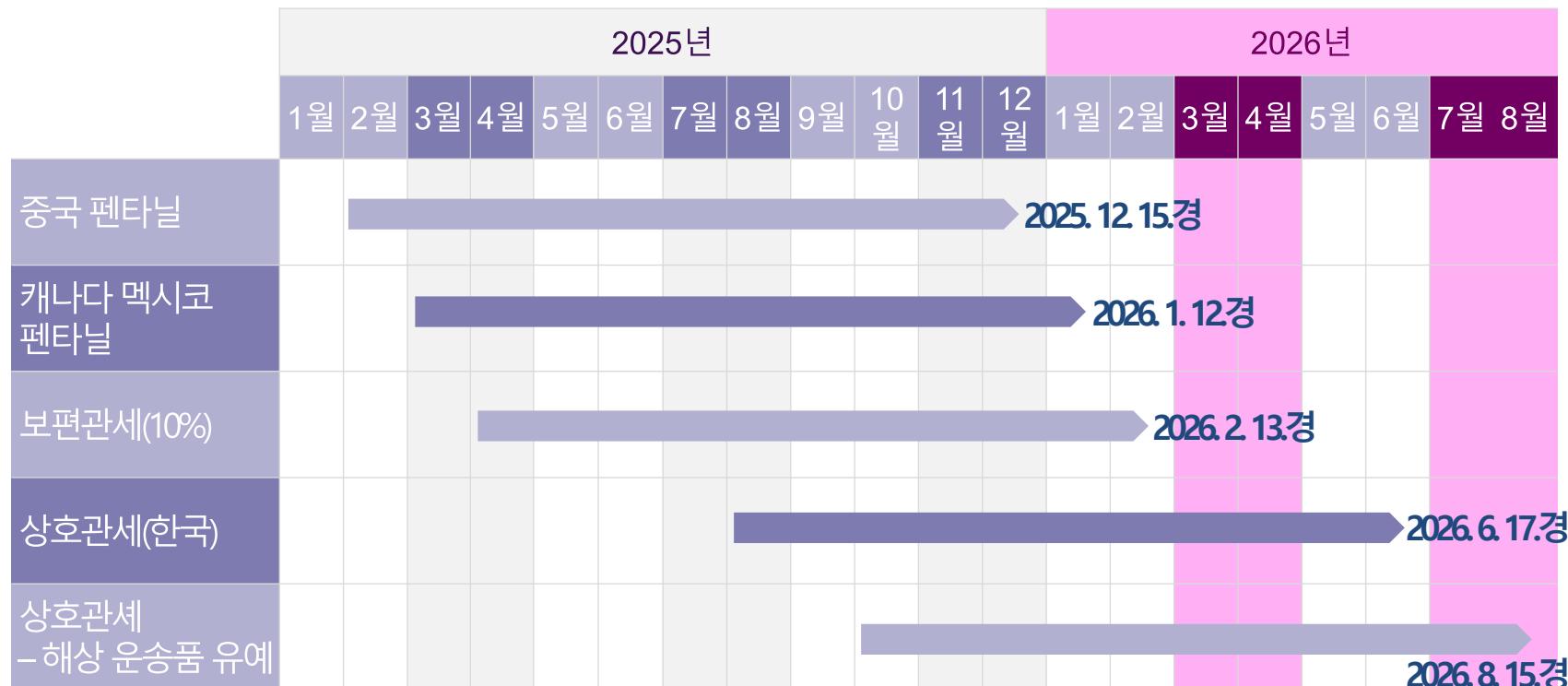


II. 관세 환급을 위한 핵심 절차



관세 환급 청구 자격이 있는 경우

→ 정산(liquidation) 시점: 통상 수입통관일로부터 314일 후



※ 미국 232조 관세(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부품 등)와 301조 관세(중국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은 해당하지 않음

II. 관세 환급을 위한 핵심 절차



정산 공고 - Official Notice of Extension, Suspension and Liquidation

An official website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Here's how you know](#)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Securing America's Borders

OFFICIAL NOTICE OF EXTENSION, SUSPENSION AND LIQUIDATION

Field Search

Entry Number i

Filler i

Importer of Record i

Surety Code

Port of Entry
--Select Port of Entry--

Liquidation Date
to

Posted Date
to

Entry Date
to

Voided Date
to

Event Type
Select Event Type

The Official Notice of Extension, Suspension and Liquidation provides public notice for liquidation actions for entry summaries filed with Customs Border Protection (CBP).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Official Notice of Extension, Suspension and Liquidation is available full-time, less scheduled maintenance windows, and is provided free of charge. This notice is in accordance with 19 CFR 159 and in compliance with the disclosures required per CBP Form 4333.

The Official Notice of Extension, Suspension and Liquidation data are updated daily and is current as of the current date. Entries for manually posted liquidations are updated throughout the day as soon as possible and will usually appear within 90 minutes after the liquidations have been processed. Under 19 U.S.C. 1514, a liquidation is final and conclusive on all persons unless a protest is filed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liquidation, the date of reliquidation, or the date of a liquidation by operation of law.

The Official Notice of Extension, Suspension and Liquidation data are available beginning as of January 14, 2017 and will be archived for 15 months.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contact 800-927-8729 or cbp.technology.service.desk@cbp.dhs.gov

Showing 0 to 0 of 0 records

Posted Date	Liquidation Date	Voided Date	Event Type	Basis	Action	Entry Number	Port of Entry	Entry Date	Entry Type	Team
No records found										

Show 25 records

Previous Next

출처: <https://trade.cbp.dhs.gov/ace/liquidation/LBNotice/>

II. 관세 환급을 위한 핵심 절차

Post-Summary Correction

Protest

1

수입통관일로부터 300일 이내
정산일 15일 전까지

2

행정적 절차
저비용, 신속(정산 시점까지)

3

정산유예
(extension request)

1

정산일로부터 180일 이내

2

법적 이의제기
고비용, 복잡(최장 2년)

3

가속처분
(accelerated dispo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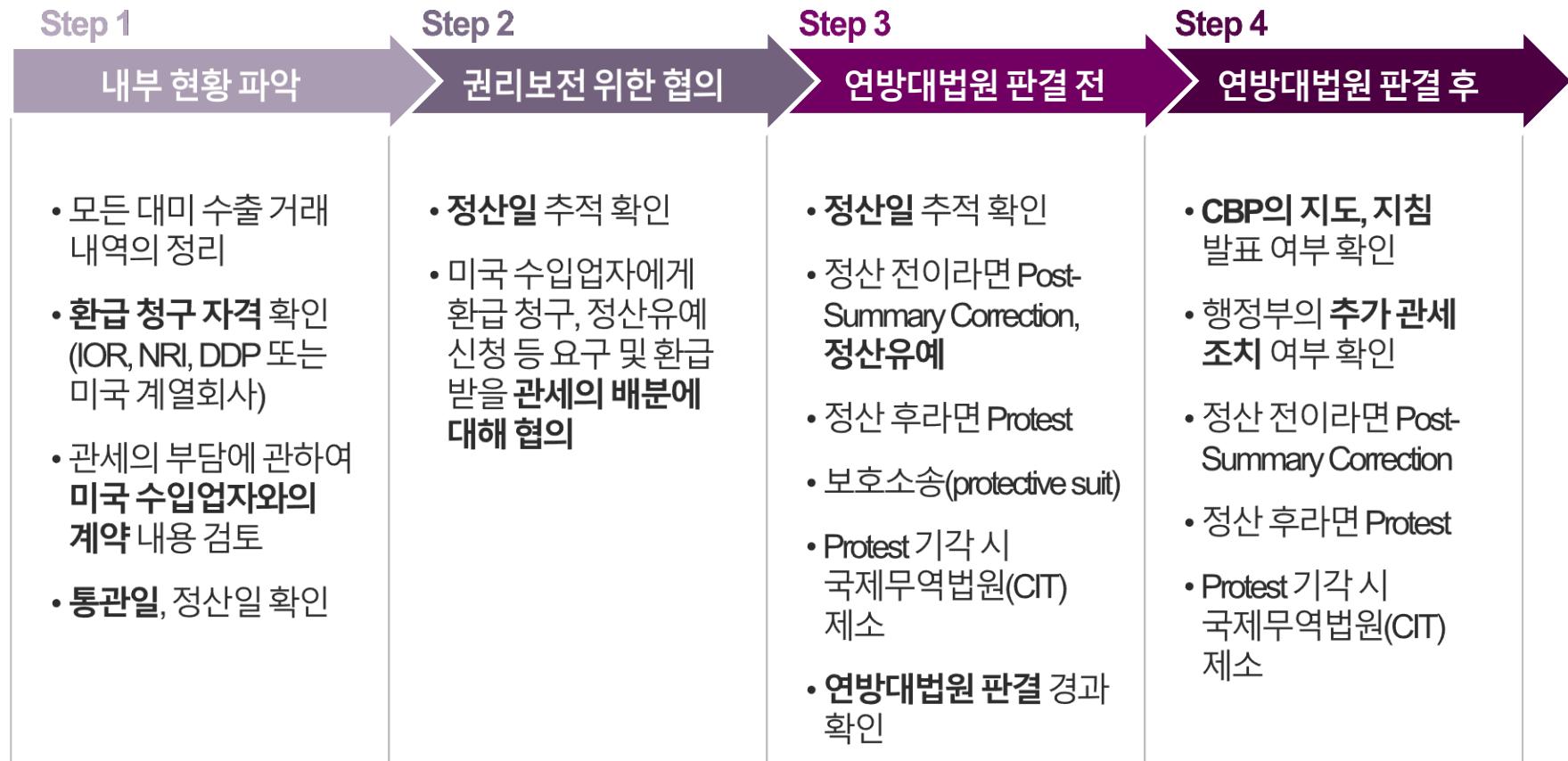
III.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및 준비사항

III.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및 준비사항



지금 준비하지 않고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면 기회를 놓칠 수 있음







감사합니다



윤영원 파트너변호사

T. 02 316 1628

E. ywyoon@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www.shinkim.com

T 02 316 4114

F 02 756 6226

본 자료에 대한 저작권 등 모든 권리는 법무법인 세종 및 작성 변호사에게 속하므로, 사전 허락 없이 본 자료를 사용, 복제, 배포, 활용하거나 다른 법률 사무소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본 자료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법무법인 세종 또는 본 자료에 기재된 담당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IEPA 소송 - 한국 업체 입장에서 가능한 선택 사항

2025년 12월 19일

- 1) 미국 연방대법원(SC)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부과가 합법적이라고 판결 → 관세는 유지되며 환급 없음.
- 2)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는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CBP에 입국 통관 상태와 관계없이 모든 IEEPA 관세를 환급하도록 지시.
- 3) 연방대법원이 IEEPA가 일부 관세 (예: 펜타닐 관세)는 허용하지만 다른 관세(상호 관세)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
- 4)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는 불법(또는 일부는 불법)이라고 판결하고 환급 절차를 결정하기 위해 사건을 국제무역법원(CIT)으로 환송.
 -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연방 항소법원 (CAFC) 판결을 완전히 뒤집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음.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논리와 관세 환급 대상자 범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함.
- 5)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환급 문제를 다룰 수도 있고, 이 문제를 하급 법원으로 환송할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대법원은 IEEPA 관세를 소급하여 징수할 수 없다고 판결할 수 있지만, CBP가 IEEPA 관세를 환급할 의무는 없다고 하거나, 특정 수입 건(예: 미결산 상태이거나 CIT 법원 소송 대상이어서 결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수입 건)에 대해서만 IEEPA 관세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결할 수 있음.

가능한 결과 및 수입업자 대응 방안 (2)

- 7) IEEPA 관세 부과 대상 수입품에 대한 관세액 확정 절차 (liquidation)가 2025년 12월 12일(중국 펜타닐)부터 조기 시작될 예정인 만큼, 다수의 미국 law firm들은 수입업체들에게 CIT에 소송 제기를 권고하고 있음.
- 8) CIT는 월요일, 자체 소송을 제기한 수입업체들의 잠재적 환급 문제를 다룬 판결을 내렸음. 법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이 IEEPA 관세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경우, 수입품의 관세액 확정 여부가 법원의 관세 환급 승인 여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음.
 - 이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만 적용됨. 법원은 정부가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에서 사법적 금반언 원칙에 따라 관세액 확정 여부가 환급 명령을 방해한다는 주장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음. 또한 법원은 19 U.S.C. § 1514(a)에 따른 관세액 확정에 대한 행정적 이의 신청 (protest)만으로는 IEEPA 관세를 회수할 수 없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음.
- 9) 결국, CIT 소송 제기는 상고법원이 환급을 특정 청구(예: 미결산 상태이거나 CIT 법원 소송 대상이어서 결산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수입품 등)로만 제한할 가능성에 대비한 위험 분산 (또는 보험) 조치.

관세 관련 CBP 절차

■ 314일 정산 기한

- 대부분의 수입품은 미국으로 수입된 날로부터 약 314일 후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정산됨. “정산”이란 관세액 및 세번 분류에 대한 최종 결정을 의미함.

■ CBP 이의신청

- 수입품 관세액 및 세번 분류가 확정되면 수입자, 통관 대리인 또는 변호사는 수입 상품과 관련된 CBP 결정에 대해 이의 (Protest)를 제기할 수 있음. 이의 신청은 청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사후 요약 정정(Post-Summary Correction)

- 수입 신고가 확정되기 전에 수입업자 또는 그 대리인은 "사후 요약 수정"을 제출하여 오류를 수정하거나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는 기본적으로 자동화 무역 시스템(ACE)을 통해 전송되는 새로운 수입 요약 신고서임.

CBP Form 7501 (Entry Summary)

KIM & CHANG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MB APPROVAL NO. 1651-0022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XPIRATION DATE 03/31/2025	
ENTRY SUMMARY							Summary Status	
							Team	DBD
1. Filer Code/Entry Number [REDACTED]	2. Entry Type 01 ABI/A	3. Summary Date 07/29/25	4. Surety Number [REDACTED]	5. Bond Type 8	6. Port Code 3901	7. Entry Date 07/17/2025		
8. Importing Carrier [REDACTED]	9. Mode Of Transport 11	10. Country of Origin VN	11. Import Date 07/16/2025					
12. B/L or AWB Number [REDACTED]	13. Manufacturer ID [REDACTED]	14. Exporting Country VN	15. Export Date 06/27/2025					
16. I.T. Number [REDACTED]	17. I.T. Date 07/16/25	18. Missing Docs	19. Foreign Port of Lading 55201	20. U.S. Port of Unloading 2704				
21. Location of Goods/G.O. Number I206/UNION PACIFIC RAILROA	22. Consignee Number SAME	23. Importer Number [REDACTED]	24. Reference Number					
25. Ultimate Consignee Name (Last, First, M.I.) and Address [REDACTED]				26. Importer of Record Name (Last, First, M.I.) and Address [REDACTED]				
City [REDACTED] State [REDACTED] Zip [REDACTED]			City [REDACTED] State [REDACTED] Zip [REDACTED]					
27	28. Description of Merchandise			32.	33.	34.		
Line No.	29. A. HTSUS Number B. ADA/CVD Number	30. A. Gross Weight B. Manifest Qty.	31. Net Quantity in HTSUS Units	A. Entered Value B. CHGS C. Relationship	A. HTSUS Rate B. ADA/CVD Rate C. IRC Rate D. Visa Number	Duty and I.R. Tax		
	I.T. DATE 07/16/25	I.T. NO. van18179807	MASTER BILL/AWB [REDACTED]	HOUSE BILL [REDACTED]	SUBHOUSE BILL [REDACTED]	BILL QTY 358 CT		
001	Invoice Number 001/SKDUS-G-2505-001S PRD ANY CTRY, EXC 99030126-0134 9903.01.25 2557 KG			N				
	OTH GL,MITS,MITNS,SPORTS A 6116.99.3500 1672.00 DPR 2500 KG			0	10%	15,449.90		
	499 MERCHANDISE PROCESSING FEE (MPF) 501 HARBOR MAINTENANCE FEE (HMF)			C2500				
	Invoice Number 001/SKDUS-G-2505-001S Invoice Value USD 154,499.40			154,499	2.8%	4,325.97		
	Total Entered Value (Invoice) 154,499.00				0.3464% 0.125%	535.18 193.12		
	Other Fee Summary for Block 39			CBP USE ONLY		TOTALS		
	499 Merchandise Processing Fee \$535.18			A. LIQ CODE	B. Ascertained Duty	37. Duty		
	501 Harbor Maintenance Fee \$193.12					19775.87		
	Total Other Fees \$728.30			REASON CODE	C. Ascertained Tax	38. Tax	0.00	
					D. Ascertained Other	39. Other	728.30	
					E. Ascertained Total	40. Total	20,504.17	
36. DECLARATION OF IMPORTER OF RECORD (OWNER OR PURCHASER) OR AUTHORIZED AGENT								
<p>I declare that I am the <input type="checkbox"/> Importer of record and that the actual owner, purchaser, or consignee for CBP purposes is as shown above. <input checked="" type="checkbox"/> owner or purchaser or agent thereof. I further declare that the merchandise <input checked="" type="checkbox"/> was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at the prices set forth in the invoices are true. <input type="checkbox"/> was not obtained pursuant to a purchase or agreement to purchase and the statements in the invoices as to value or price are tru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also declare that the statements in the documents herein filed fully disclose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the true prices, values, quantities, rebates, drawbacks, fees, commissions, and royalties and are true and correct, and that all goods or services provided to the seller of the merchandise either free or at reduced cost are fully disclosed.</p> <p>I will immediately furnish to the appropriate CBP officer any information showing a different statement of facts.</p>								
41. DECLARANT NAME (LAST, FIRST, M.I.)			TITLE	SIGNATURE		DATE		
Sosa, Yvette			ATTY-IN-FACT			07/17/2025		
42. Broker/Filer Information Name (Last, First, M.I.) and Phone Number [REDACTED]				43. Broker/Importer File Number [REDACTED]				
CBP Form 7501 (5/22)								
Page 1 of 1								

Questions & Answers

감사합니다

KIM & CHANG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39
(우) 03170

T 02 3703 1114
F 02 737 9091/9092

www.kimchang.com
lawkim@kimchang.com